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
절차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한창동위원외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자동차 성능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의 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

○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○ 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업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확보 하도록 한 규정과

○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(1999.12.31)개정으로 하자보증금 관련조항 삭제와 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개선 등으로
- 자동차 매매에 있어 품질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